

●소방청공고제2020-78 호

「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9일

소방청장

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식을 신설하고, 자체 점검항목과 성능시험조사항목은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 및 수정하며, 성능시험조사표를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(안 고시 별표 1)
- 나.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(안 고시 별지 제1호의3)
- 다.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(안 고시 별지 제3호)
- 라. 성능시험조사표 개선(안 고시 별지 제4호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가. 소방시설등 점검표에 대한 사항
 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화재예방과
 - 전자우편 : alswjdr1@korea.kr
 - 팩스 : 044-205-8915
- 나.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대한 사항
 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-3동 소방청 623호 소방산업과
 - 전자우편 : hongboso@korea.kr
 - 팩스 : 044-205-8196
- 다.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ople.go.kr>)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소방시설등 점검표에 대한 사항

소방청 화재예방과(전화 044-205-7524, 팩스 044-205-8915)

나.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대한 사항

소방청 소방산업과(전화 044-205-7507, 팩스 044-205-8196)

●기상청공고제2020-74호

기상청 고시 「지진해일 관측장비 성능·규격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9일

기 상 청 장

「지진해일 관측장비 성능·규격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」 고시 내용을 반영하고 다양한 지진해일 관측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재검토기한 연장(안 제12조)

나. 지진해일과고계의 성능·규격 중 해수면관측기 부분에 레이더식 신설(안 별표 1)

다. 지진해일 관측장비 용어 정비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29일까지 기상청장(참조: 지진정보기술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통합입법예고센터

1) 전자우편 : ljhmmm@korea.kr

2) 주소 : (우)07062,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,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

3) 팩스 : 02-831-8746

4)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(전화: 02-2181-008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“통합입법예고>(부처)행정예고”와 기상청 홈페이지(<http://www.kma.go.kr>)“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